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배상명령신청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27. 2011고합89,2011초기1306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권성희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이동엽 외 1인

【배상신청인】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인 1(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)을 징역 4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.
- 2. 배상신청인에게,
- 가. 피고인 1은 850,000,000원을 지급하고,
- 나.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각자 위 금원 중 60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- 3. 위 2항 기재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